



제417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병역판정검사 등 수검 시 학교 등에서의 불이익 처우 금지〉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87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대식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4. 6. 21.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병력동원 및 훈련을 학교와 직장의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등을 하는 때에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및 제74조의4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각종 검사 수검을 이유로 학교·직장에서 결석·휴무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및 제74조의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 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 생에 대해서는 그 <u>소집된 기간</u> 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u>소집</u> 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 다. 1. 2. (생략) <u><신설></u>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 ----- ----- ----- <u>소집된</u> <u>기간 또는 검사일</u> ----- <u>병</u> <u>력동원소집등을</u> ----- -----. 1. 2. (현행과 같음) 3. <u>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u> <u>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u> <u>검사, 제77조의2에 따른 확인신</u> <u>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재신체검사·재검사</u>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 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 -----

현행	개정안
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u>소집된 기간</u> 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u>소집</u> 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 ----- <u>소집된 기간</u> <u>또는</u> <u>검사일</u> ----- <u>병력동원</u> <u>소집등을</u> -----.

□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전시근로소집점검 등에 응소하는 경우 직장·학교에서 결석·휴무처리 등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¹⁾, 이를 위반하여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²⁾ 하고 있음.

병력동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 응소 시 학교와 직장에서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인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 각종 검사 수검 시

1)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 소집

「병역법」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2) 「병역법」 제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이유로 학교·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및 병역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병역법에 따른 검사의 종류(병무청 실시) >

구 분	내 용	근 거 (병역법)
병역판정검사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받기 위한 검사	제11조
재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을 받은 후 4년간 징·소집되지 않은 경우 5년째에 다시 받는 병역판정검사	제14조의2
입영판정검사	입영부대에서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 대신 '21년부터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검사	제14조의3
신체검사·체력 검사	모집병 선발 과정 중 실시하는 신체검사·체력검사	제20조
확인신체검사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제77조의2
재신체검사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인 사람 또는 입영판정검사 결과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제14조 제14조의3
재검사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입영신체검사 결과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우 귀가시킨 후 다시 실시하는 검사	제47조

□ 개정안은 병역의무 이행에 필요한 필수 절차인 병역판정검사 등 각종 신체검사 수검 시에도 학교·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병역의무자에게 병역판정검사 수검 등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병역 의무 이행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취지로 보임.

□ 다만, 안 제74조의3제3호에서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 검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재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재신체검사 및 재검사는 「병역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4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조문은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으로 병력동원 등 ‘소집’에 관한 사항에 더하여 병역판정검사 등 ‘검사’에 관련되는 사항이 추가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동 법 제74조의3, 제74조의4 및 제93조의2의 조제목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수정의견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u>소집된 기간</u> 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u>소집을</u>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 2. (생략) <u><신설></u>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 ----- -----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 ----- <u>병력동원소집등을</u> ----- -----. 1. 2. (현행과 같음) 3. <u>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제77조의2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재검사</u>	제74조의3(<u>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u>) (동일) 1. 2. (동일) 3. <u>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재검사</u>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u>소집된 기간</u> 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u>소집을</u>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 ----- ----- -----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 ----- <u>병력동원소집등을</u> ----- -----.	제74조의4(<u>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u>) (동일)
제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생략)	제93조의2(<u>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u>) (현행과 같음)	제93조의2(<u>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u>) (동일)

문 의 처
02)6788-5307